

生命保險의 比較優位와 賯蓄競爭力 分析

李 永 琪
金 明 均
朴 珍 雨

▷ 目 次 ◁

- I. 序 論
- II. 賯蓄性 生命保險에 대한 理論的 檢討
- III. 賯蓄性 保險商品의 價格競爭力 分析
- IV. 生命保險產業 發展을 위한 課題
- V. 結 言

I. 序 論

그동안 우리나라의 生命保險產業은 급속한 外形成長을 이루어 최근에 들어서는 世界 第 10大 生命保險國家로 浮上하였으며 生命保險料/GNP의 比率, 즉 國民所得에 대한 生命保險料의 比重은 4%를 上廻하는 世界最高의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生命保險

은 保障機能보다는 주로 賯蓄動員機能을 담당하여 왔다. 收入保險料나 支給保險金에 있어서 保障性 保險이 차지하는 비중이 5%내외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賯蓄性 保險으로 구성된다. 臺灣, 日本, 美國의 경우 保障性 保險의 支給保險金에 대한 비율이 1983년 현재 각각 39.6%, 22.6% 및 31.3%에 이르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生命保險은 賯蓄性에 크게 偏重되어 있다.

國內 賯蓄動員의 極大化를 위해서 生命保險의 역할도 중요하나 그에 따른 문제점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新契約, 保有契約, 收入保險料 등에서 年平均 50% 수준으로 급신장해 왔으나 保險商品이 消費者的 要求(needs)에 副應하지 못해 解約率이 매우 높고 解約時 還給金이 적어 加入者の 손실이 막대하였다.

이것은 保險商品政策이 賯蓄性에 偏重되어 있고 賯蓄保險料에 대해 높은 事業費가 부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事業費率(事業費/營業保險料)이 최근에는 현저히 하락하여 美·

筆者 : 李永琪一本院 研究委員

金明均·朴珍雨一本院 研究員

* 筆者は 草稿에 대해 有益な 助言을 해주신 本院의 金仁哲 博士, 李德勳 博士, 李啓植 博士께 감사드린다. 그러나 여기에 提示된 見解나 어찌한 誤謬도 전적으로 筆者の 責任임을 밝혀둔다. 本稿의 整理에 烈誠을 아끼지 않은 林明姬 研究助員에게도 감사한다.

日 등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보험료 수준이 이를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에 보험加入者가 부담하는事業費規模도 또한 매우 높게 나타난다¹⁾. 또 최근 年間 수백억원 이상의 大規模 利差損이 발생하는 것이나 市場規模의 급팽창에 따라 開放壓力이加重되고 있는 것도 결국은 貯蓄性 保險에 置重해 온 데서 그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本稿의 第Ⅱ章에서는 먼저 銀行貯蓄(ordinary savings)과 死亡保險(life-insurance) 및 生存保險(pure endowment) 등 세 가지 貯蓄代案間의 代替性 및 補完性을 검토하고 이를 세 가지 金融商品의 結合을 통해 人間의 死亡 및 生存에 따른 生命偶發的 契約(life-contingent contract)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保障機能과 貯蓄機能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生命保險會社의 養老保險을 구입하는 방안이나 또는 그 代案으로 銀行의 積金貯蓄과 死亡保險에 동시에 加入하는 방법이 있음을 보여 주고자 한다.

保險經營上 獨특하게 발생하는 事業費가 保險料에 附加됨으로 해서 養老保險의 加入者 「코스트」가 銀行貯蓄과 死亡保險을 結合하여 貯蓄과 保障의 目的을 동시에 달성하는 경우의 「코스트」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처럼 生命保險會社의 높은 媒介費用(financial intermediation cost)이 발생할 때는 개인의 最適投資「믹스」(optimal investment mix)에 死亡保險과 生存保險이 동시에 포함될 수 없게 된다.

또 養老保險(endowment)은 保障機能과 貯

蓄機能을 결합한 것으로서 이것은 死亡保險과 積金貯蓄의 形태로 分離可能(separable)하기 때문에 만약 養老保險의 加入者「코스트」가 死亡保險과 積金貯蓄을 결합한 경우의 「코스트」보다 높다면 銀行이 生命保險會社로부터 구입한 死亡保險과 銀行의 積金貯蓄을 결합하여 가입자에게 養老保險보다 저렴한 「코스트」로 販賣할 수 있는 裁定去來(financial arbitrage)의 可能性이 있다.

第Ⅲ章에서는 현실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保障과 貯蓄의 目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手段間의 加入者「코스트」를 比較, 例示하고 生命保險이 높은 事業費를 발생할 때 貯蓄性 保險의 價格競爭力이 銀行의 積金貯蓄에 비해 劣位에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第Ⅳ章에서는 우리의 生命保險이 貯蓄性 중심으로 運營되어 온 데 따른 問題點과 課題를 保險商品戰略, 保險料率 公示, 市場開放化, 支給能力, 所有構造의 측면에서 檢討할 것이다.

II. 貯蓄性 生命保險에 대한 理論的 檢討

일반적으로 消費者(consumer)가 선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保障 및 貯蓄手段(protection and savings plans)으로 다음의 네 가지를 들 수 있다²⁾.

1) 積金貯蓄: 일정한 금액을 一定期間동안 挿入하면 契約滿期時 加入者の 生死와는 관계 없이 元利金이 지급된다.

2) 死亡保險: 일정한 保險料를 납입할 경우

1) 李永琪(1986 b.) 및 [附錄 C] 參照.

2) 前揭書 參照.

契約期間內 加入者が 死亡할 경우에만 約定된
死亡保險金이 지급된다.

3) 生存保險：加入者가 契約滿期時까지 生存하는 경우에만 約定保險金(滿期還給金)이 지급된다.

4) 養老保險：死亡保險의 保障機能과 生存保險의 賯蓄機能을 結合한 것으로서 加入者가 契約期間 중 死亡하는 경우와 契約満期時까지 生存하는 경우 모두 約定保險金이 지급된다.

여기서 積金貯蓄이나 保險加入을 넓은 의미의 投資(investment)라고 定義하고 각 投資에 대한 代價를 「코스트」 또는 價格이라고 하자. 다음에서는 이러한 네 가지 기본적인 投資機會(investment opportunities)를 結合하여 死亡時와 生存時 각각 一定金額의 紿付(pay-off)를 염두하는 投資「믹스」(mix)를 구성해 본다.

1. 保險會社의 事業費가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銀行이나 保險會社 등 모든 金融媒介機關(financial intermediaries)의 費用은 金融機關 입장에서 볼 때 事業費 또는 金融媒介費用(financial intermediation cost)이며 顧客의 입장에서는 去來費用(transaction cost)이다. 특히 保險會社는 募集制度의 特수성 등으로 인해 막대한 事業費가 발생하고 이것은 모두 附加保險料의 형태로 保險加入者에게 부담된다. 그러나 우선 銀行이나 保險會社 모두 事業費뿐만이 아니라 稅金 등 일체의 去來費用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契約期間이 1年, 利子率이 r 이며, 銀行貯蓄의 元利金과 契

約保険金이 모두 1원이라고 하자. 賯蓄元金이나 保險料는 모두 期初에 납입되고 元利金 및 保險金은 期末에 지급된다고 假定할 때, 먼저 賯蓄의 元金 C_1 은

이 되며, 또 死亡保險料(C_2)는 死亡率에 따라
결정되므로 기간중 死亡率을 q 라고 하면

가 되고, 生存保險의 貯蓄保險料(C_3)는 生存率($1-q$)에 의해 결정되므로

가 된다. 여기서 C_2 나 C_3 는 利子率이나 死亡率에 의해서 결정되는 공정한 保險料(actuarially fair premium)이다. 한편 保障機能과 賽蓄機能을 結合한 養老保險의 保險料(C_4)은

$$C_4 = C_2 + C_3 = vq + v(1-q) = v \dots \dots \dots (4)$$

로서 貯蓄의 元金과 동일하게 된다.

이를 대체의 投資案을 行列式(matrix)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死亡保險과 生存保險의 線型結合(linear combination)關係에 있는 養老保險을 제외하면 投資行列式은³⁾

$$X \equiv \begin{bmatrix} X_1 & X_2 & X_3 \\ 1 & 1 & 0 \\ 1 & 0 & 1 \\ v & vq & v(1-q) \end{bmatrix}$$

이 된다. 여기서 X_1 , X_2 및 X_3 는 각각 銀行貯蓄 또는 1年滿期 債券(bond), 1年滿期 死亡保險, 1年滿期 生存保險으로 정의되며, 특히 X_2 및 X_3 는 保険貯蓄(actuarial savings)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X_i 는 임가의 生과 死에 따른 狀況偶

3) D. Moffet (1979 a.) 参照

의 債券(state-contingent claim security)으로서 生存 및 死亡 등 두 가지 狀況(state)에 따른 支給額(pay-off, 保險金 또는 滿期還給金)이 1단위(1원)이며 그 價格은 $j=1, 2, 3$ 에 대해 각각 v, vq 및 $v(1-q)$ 원인 原始債券(primitive security)이라고 할 수 있다⁴⁾. 따라서 개인은 이를 原始債券을 結合하여 자신의 목적에 附合하는 投資「믹스」(mix) X_4 를 구성할 수 있다. 만약 이 개인이 死亡時 B 원을 支給받고 生存時에는 F 원을 支給받는 代價(cost)로 C 원을 지불하는 경우의 投資「믹스」 X_4 는

의 「베타」로 표시할 수 있다. 여기서 投資「미스」 X_4 의 「코스트」 C 는 B 와 F 의 期待現在價值의 合計와 같아야 하므로

가 된다. X_4 를 X_1, X_2, X_3 의 결합으로 나타내면,

$$C = va + vq \cdot b + v(1-q) \cdot c \quad \dots\dots\dots (10)$$

이 된다. 다시 말하면 投資案 X_4 와 동일한 목적을 얻기 위해서는 原始債券 X_1 , X_2 및 X_3 를 각각 a , b 및 c 단위(unit)를 구입해야 한다. 그러나 X 의 決定係數(determinant)가 0으로서 X 의 階數(rank)는 2이며 따라서 X_4 는 X_1 , X_2 , X_3 중 어느 두 요소의 結合으로 표시될 수 있는데, X_4 의 가능한 投資「믹스」는 <表 1>과 같다.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去來費用이 존재하지 않고 保險料나 賯蓄元金이 모두 計理의으로 公正하게 결정된다면 $X_4 = [B, F, C]$ 의 단일 金融商品을 購入하는 경우나, 原始債券 X_1, X_2, X_3 로 구성되는 세 가지 投資「믹스」1), 2) 및 3) 중 어느 하나를 選擇하는 경우 모두 死亡時에는 B원, 生存時에는 F원을 支給받으며 이러한 投資에 대한 「코스트」C는 모든 경우에 있어 동일하다.

따라서 效率的이고 완전한 資本市場(efficient and perfect capital market)에서는 X_1 , X_2 및 X_3 의 세 가지 原始債券의 적절한 結合을 통해 死亡에 대한 保障과 賯蓄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으며 그 結合方法間에 있어 「코스트」는 모두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表 1〉 貯蓄, 死亡保險, 生存保險의 結合에 의한 投資「믹스」

投 資 「의 스」	a	b	c	C
1) aX_1+bX_2 : (貯蓄+死亡保険)	F	$B-F$	0	$v \cdot F + vq(B-F)$
2) $aX_1 + cX_3$: (貯蓄+生存保険)	B	0	$F-B$	$v \cdot B + v(1-q)(F-B)$
3) bX_2+cX_3 : (死亡+生存保険)	0	B	F	$vq \cdot B + v(1-q)F$

註: a, b 및 c 는 式(3), (9) 및 (10)에서 열어짐. 단 1과 2)에서 B 와 F 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b 또는 c 가 負가 될 수 있다. 이것은 個人이 死亡保険을 $|b|$ 단위 만큼 ($B < F$ 의 경우), 또는 生存保険을 $|c|$ 단위 만큼 ($F < B$ 의 경우) 販賣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個人的保険販賣가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b \geq 0$, $c \geq 0$ 의 條件이 만족되어야 한다.

4) 원始債券(pure 또는 primitive security)에 대한概念은 Copeland & Weston (pp. 94~118) 參照.

어느 개인이 死亡時에 2,000원의 死亡保險金을 지급받고 滿期生存時には 1,000원의 質蓄保險金을 받고 싶을 경우 만약 金利가 10%, 滿期 1年, 기간 중 死亡確率이 1%라면 이 개인은 生命保險會社가 판매하는 $B=2,000$ 원 및 $F=1,000$ 원인 養老保險을 $C=918.18$ 원⁵⁾에 구입하거나 또는 <表 1>의 1)의 경우와 같이 元金 909.09원으로 滿期元利金이 1,000원인 質蓄에 加入하고 동시에 9.09원의 保險料로 保險金이 1,000원($=B-F$)인 死亡保險에 加入하면 總費用 918.18원으로 동일한 保險과 質蓄의 效果를 얻게 된다.

2. 生命保險會社의 事業費가 存在하는 경우

生命保險會社는 代理店이나 募集人을 통한
 商品販賣 戰略의 特성상 銀行貯蓄에 비해 막
 대로 규모의 事業費가 발생하고 이것은 保險
 加入者가 납입하는 保險料의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⁶⁾. 따라서 保險加入者는 式(2) 및
 (3)에서 計算된 計理的으로 공정한 純保險料
 보다 높은 保險料를 지불하게 된다. λ , 및 λ_s
 를 각각 死亡保險과 生存保險의 事業費率(事
 業費/營業保險料)이라 하면 事業費를 포함한
 保險「코스트」는 각각

$$C_2 = vq\lambda_2, \quad \lambda_2 = 1/(1-\lambda_c) \quad \dots \dots \dots (11)$$

5) 式(6)을 이용하여 $C = v[qB + (1-q)F] = 1/(1+0.1) \times [0.01 \times 2,000 + 0.99 \times 1,000] = 918.18원$.

6) 1984년 현재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의 평균事業費率
 (事業費/營業保險料)은死亡保險의 경우 55.9% 수준
 이며生存保險은 22.5%, 養老保險은 14.2%에 이르
 고 있다(李永琪, 1986 b 參照)

7) X 행렬식의决定係數(determinant) $|X| = v[1 - q\lambda_2 - (1-q)\lambda_3]$ 이여, λ_2 및 λ_3 에 대한條件式 (13) 및 (14)에서 $|X| \neq 0$ 가成立한다.

$$C_3 = v(1-q)\lambda_3, \quad \lambda_3 = 1/(1-\lambda_s) \quad \dots\dots (12)$$

로 표시할 수 있다. 따라서 投資 行列式은 아래와 같이 된다.

$$X \equiv \begin{bmatrix} X_1 & X_2 & X_3 \\ 1 & 1 & 0 \\ 1 & 0 & 1 \\ v & vq\lambda_2 & v(1-q)\lambda_3 \end{bmatrix}$$

여기서 λ_2 및 λ_3 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볼 때 먼저 正(positive)의 事業費가 발생하는 한 $\lambda_2 > 1$, $\lambda_3 > 1$ 이다. 또 $\lambda_2 \geq 1/q$, $\lambda_3 \geq 1/(1-q)$ 가 성립할 경우 X_2 (死亡保險)나 X_3 (生存保險)의 「코스트」 $vq\lambda_2$ 및 $v(1-q)\lambda_3$ 는 X_1 (貯蓄)의 「코스트」 v 보다 높은 반면 支給構造(pay-off)는 낮으므로 X_2 나 X_3 에 의해 X_1 이 항상 越(dominate)하여 X_2 및 X_3 의 販賣가 불가능해지게 된다. 따라서

의 條件이 만족되어야 한다.

式(13)에서 $\lambda_2 = 1/(1-\lambda_r) < 1/q$ 로서 死亡保険의 事業費率(λ_r)은 生存率($1-q$)보다 클 수가 없으며, 또 式(14)에서 $\lambda_3 = 1/(1-\lambda_r) < 1/(1-q)$ 에서 生存保険의 事業費率(λ_r)는 死亡率 q 보다 항상 낮아야 함을 알 수 있다. 즉 이 모델에 의하면 死亡率 $q=0.01$ 이라면 死亡保険의 事業費率은 $1-0.01=0.99$, 즉 99%를 초과할 수 없으며 生存保険의 事業費率은 1%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것은 死亡保険이나 貯蓄保険이 效率的 金融市場에서 銀行貯蓄과 競争商品이 될 수 있는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投资行列式 X 는 正規行列(nonsingular)이
여⁷⁾, 따라서 原始債券 X_1 , X_2 , 및 X_3 는 獨

立的 投資機會(independent investment opportunities)이므로 새로운 投資「믹스」 X_4 는 X_1 , X_2 , X_3 의 結合으로 나타낼 수 있다. 즉 X_4 , B , F 는 각각 式(7), (8), (9)로 表示되고 C 는

$$C = v\alpha + vq\lambda_2 b + v(1-q)\lambda_3 c \quad \dots\dots\dots(15)$$

이 된다. 여기서 現實的으로 개인은 原始債券 X_2 및 X_3 를 판매할 수 없다고 할 때 $b \geq 0$, $c \geq 0$ 가 성립한다. 投資「믹스」 X_4 의 「코스트」 C 를 다시 정리하면⁸⁾

$$\begin{aligned} C = & v[qB + (1-q)F] + v[(\lambda_2 - 1)qb \\ & + (\lambda_3 - 1)(1-q)c] \end{aligned} \quad \dots\dots\dots(16)$$

로 表示될 수 있으며, $\lambda_2 > 1$, $\lambda_3 > 1$ 이므로 $C > v[qB + (1-q)F]$ 이다. $b=c=0$ 가 아닌 한 貯蓄(X_1), 死亡保險(X_2) 및 生存保險(X_3)을 結合한 投資「믹스」(X_4)의 「코스트」 C 는 保險의 去來費用이 存재하지 않는 경우(즉 $\lambda_2 = \lambda_3 = 1$ 인 경우)에 비해 높아지며 이것은 당연한 結論이라 하겠다.

去來費用이 存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X_4 의 投資「베타」 $[B, F, C]$ 중 어느 두 요소가 주어지면 나머지는 式(6)에 의해 결정되었으나 生命保險會社의 事業費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式(16)에서 B, F, C 중 어느 두 要素가 주어지더라도 나머지 요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最適「포트폴리오」 X_4 를 구성하는 b 및 c 가 먼저 구해져야 한다. b 및 c 는 첫째, F, B 가 주어진

8) 式(8) $\cdot vq +$ 式(9) $\cdot (1-q)v$ 를 C 에 대하여 整理.

9) 銀行과 保險會社가 모두 投資「포트폴리오」를 완전히 分散시킨다면(fully diversified portfolio) 이들의 體系의 危險(systematic risk)은 동일하고 따라서 期待收益率도 동일할 것이다. 비록 現실적으로 銀行積金 貯蓄金利는 生命保險의 保障金利보다 다소 높으나 生命保險의 利差損益이 契約者配當 등을 통해 保險加入者에게 彙屬된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利子率은 동일한 것으로 假定할 수 있다.

상태에서 C 를 最小化하는 條件, 둘째, F, C 가 주어진 상태에서 B 를 極大化하는 條件, 또는 세째, B, C 가 주어진 상태에서 F 를 極大化하는 條件 등에 의해 구해 질 수 있다(附錄[A] 參照).

여기서 b 와 c 의 관계는 $b \geq 0$ 이면 $c=0$, 또는 $c \geq 0$ 이면 $b=0$ 가 성립하게 된다(附錄[B] 參照). 다시 말하면 最適投資「믹스」 X_4 를 결정하는데는 X_2 와 X_3 가 동시에 포함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銀行과 生命保險會社가 동일한 收益率 r 을 貯蓄者에게 提供한다면⁹⁾ 生命保險의 生命偶發의(life-contingent) 貯蓄商品의 판매에 있어 保險固有의 事業費가 발생하는 한 死亡保險(X_2)과 生存保險(X_3)이 개인의 最適投資「믹스」에 동시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銀行貯蓄(X_1)과 死亡保險(X_2)을 結合하던가 또는 銀行貯蓄(X_1)과 生存保險(X_3)을 結合함으로써 死亡保險(X_2)과 生存保險(X_3)을 結合하는 方法보다 더 낮은 「코스트」로 貯蓄目的과 死亡에 대한 保障目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III. 貯蓄性 保險商品의 價格競爭力 分析

第Ⅱ章에서는 銀行貯蓄과 死亡保險, 生存保險에 의한 개인의 生命偶發의 貯蓄契約(life-contingent savings or investment contract)에 대해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生命保險 特有의 事業費가 없는 경우는 이들 세 가지 貯蓄手段 중 두 가지를 結合함으로써 生存 또는 死亡에 따라 일정한 紙付(pay-off)를 받는 最適貯蓄契

의 가능성을 보았고 두번째 生命保險의 事業費가 존재하는 경우는 死亡保險과 生存保險이 동시에 最適貯蓄「믹스」에 포함될 수 없음을 증명하였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첫째, 貯蓄이나 保險의
契約期間이 長期인 경우가 많고 둘째, 대부분
의 貯蓄者가 일정한 巨額을 定期預金하기보다
는 장기간에 걸쳐 일정액을 積立함으로써 滿
期에 巨額의 貯蓄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으며 세째, 일반적으로 生命保險商品은 단
순한 死亡保險뿐만이 아니라 이들을 結合한
養老保險과 기타 다양한 契約條件의 保險商品
이 존재한다. 따라서 本章에서는 第Ⅱ章의 모
델을 보다 一般化하고 이것을 이용하여 現實
的인 金利, 死亡率, 事業費率을 적용하였을
때 貯蓄과 保障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
한 각 代案間 加入者 부담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보여주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금
까지 貯蓄保險商品을 중심으로 急伸張해 오
던 生命保險產業이 앞으로 견실하며 지속적인
成長, 發展을 圖謀하기 위해서 필요한 政策的
및 經營戰略의 의미를 導出하고자 한다.

먼저 第Ⅱ章의 貯蓄 및 保險契約 모델을 일 반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變數들을 정의하자.¹⁰⁾

P_r : 危險保險料(年間)

P_s ：貯蓄保險料(年間)

$$P_e : \text{養老保險純保險料} = \text{危險保險料} + \text{貯蓄保險料} = P_r + P_s$$

P_b : 銀行貯蓄積金의 年拂入金

B：死亡保險金

F : 銀行積金貯蓄의 元利金이나 生存保險의 滿期還給金

m : 銀行積要貯蓄의 解約時 中途還給金
의 期待現在價值

T : 契約年數

y : 加入者의 加入時 연령

N_t : 生命表上의 $(y+t)$ 歲 初의 生存者數
 $(N_0 = \text{初期 保険加入者數})$

q_t : 生命表上 $(y+t)$ 歲與 $(y+t+1)$ 歲間
的 年死率

$d_t \equiv q_t N_t$, t 期中 死亡者數

$v=1/(1+r)$, r : 利子率

따라서 死亡保險의 경우 危險保險料(P_r),
 生命保險의 賯蓄保險料(P_s), 및 死亡保險과 生存保險을 結合한 養老保險의 純保險料(P_e)는
 아래와 같이 導出된다.

단, 여기서 Σ 는 $t=0$ 에서 $t=T-1$ 까지의 합을 나타낸다. 生命保險商品의 경우 危險保險料와 貯蓄保險料 등 純保險料외에 事業費가 附加되므로 附加保險料를 포함한 營業保險料(P_o)는 事業費率(事業費/營業保險料)을 λ 라고 하면 P_o 와 事業費(E)는 각각

$$E \equiv P_+ - P_- \equiv P_+ \cdot [\lambda_+/(\lambda_+ + \lambda_-)] \quad \dots\dots (21)$$

로 표시된다. 또 銀行積金貯蓄의 年拂入金
 $(P'_{t+1})^{\frac{1}{t-1}}$

10) 用語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李永琪(1986 b.) 參照.

11) 다음에 積金拂入金의 調整額을 P_b' 로 나타내기 위해
서 여기서 調整前 拂入金을 P_b '로 表示.

에 의해 계산될 수 있다.

生存保險의 경우 加入者의 死亡 등에 의해 滿期前에 解約할 경우에는 이미 納入된 保險料는 일체 加入者에게 還給되지 않음에 반해 銀行의 積金은 일반적으로 中途解約의 경우라도 이미 납입한 積金額의 元利金을 받으므로 契約期間(T 년) 중

$$m = \sum v^t (d_t / N_0) [P'_b \sum v^{-z}] \dots \dots \dots \quad (23)$$

이 된다. 여기서 $P'_b \sum v^{-z}$ 는 加入者가 t 期 중 死亡할 경우 $z=1$ 에서 t 期까지 이미 納入한 積金元利金의 합계액이며, d_t / N_0 는 契約初期 加入者가 t 期 중 死亡할 確率을 나타낸다.

m 은 生存保險과 달리 銀行貯蓄의 경우 받게 되는 中途解約還給金의 期待現在價值로서 이것은 積金의 年拂入金을 실제로 輕減시키는 것과 같으므로 負擔輕減分을 α 라 하면, $m = \sum \alpha v^t$ 의 관계에서,

$$\alpha = m / \sum v^t \dots \dots \dots \quad (24)$$

이며 式(25), (26), (27)에서 m , α 가 구해지고 따라서 生存保險의 保險料 P_s 와 비교 가능한 銀行積金의 實質拂入金 P_b 는

$$P_b = P'_b - \alpha \dots \dots \dots \quad (25)$$

가 된다.

다음의 〈表 2〉 및 〈表 3〉에서는 앞의 保險料算出 方式에 따라 현실적인 자료를 사용하여 각 生存保險商品 및 銀行積金貯蓄間의 加入者 「코스트」를 비교하였다. 비록 死亡率, 事業費率, 利子率은 현실적인 數值를 사용하였으나 계산의 단순화를 위해서 銀行金利와 保險의 保障金利와의 차이, 解約에 따른 손실이나 契約者 貸付惠澤 등 기타의 사항들은 계

산에 고려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 表에서 제시된 貯蓄手段間 加入者 「코스트」가 결코 保險 및 積金商品의 實제 「코스트」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事業費率 등은 각 保險商品種類別 平均值를 적용하였고 또 生命保險會社에서 적용하는 事業費 附加方式이 아닌 簡易計算方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계산된 保險商品의 保險料와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나 本分析에서 의도하는 바는 生命保險의 높은 事業費가 加入者 「코스트」로 賦課되는 한 貯蓄性 生存保險은 그 代替商品인 銀行積金과의 價格競爭에서 劣位(inferior)에 있으며, 따라서 貯蓄性保險이 積金貯蓄에 비해 非價格競爭要因이 강하지 않는 한 貯蓄誘因에 있어 은행의 積金貯蓄보다 불리한 입장에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生命保險 事業費의 韓·美·日間 比較는 [附錄 C] 參照).

먼저 〈表 2〉는 生命保險會社가 판매하는 基本商品인 生存保險 및 死亡保險과 이들을 結合한 養老保險間의 加入者 「코스트」를 30세 남자의 경우를 들어 비교하고 있다. 加入者が 死亡과 生存의 두 狀況에서 모두 1,000원의 支給(pay-off)을 희망한다면 生命保險會社가 販賣하는 養老保險에 加入하거나 또는 死亡保險과 生存保險을 각각 購入하여 이들을 結合함으로써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後者の 경우는 加入者が 負擔하는 年保險料는 87.40원으로 養老保險의 경우의 76.34원에 비해 加入者 「코스트」가 약 11.08원, 즉 14.5%나 높다. 이처럼 保障과 貯蓄을 동시에 달성하는 두 가지 手段間에 「코스트」 차이가 나는 것은 計理的으로 공정한 保險料, 즉 純

保險料 ($P_r + P_s$)는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保險會社가 부과하는 事業費率이 각商品別로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養老保險의 保險料算定에서 다른商品에 비해 낮은 事業費率을 부과할 때 死亡保險과 生存保險을 별도로 購入하는 것보다 養老保險을 통해 貯蓄 및 保障目標을 達成하는 것이 저렴하게 된다.

다음의 <表 3>은 保障과 貯蓄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方法으로서 (1) 養老保險, (2) 團體保險 및 (3) 死亡保險과 定期積金을 結合하는 세 가지 手段間의 加入者「코스트」를 비교하고 있다¹²⁾. 團體保險도 養老保險과 마찬 가지로 貯蓄性과 保障性이 混合되어 있으나 훨씬 낮은 事業費率이 적용됨에 따라 養老保險보다 保險料가 저렴하다.

<表 3>의 加入者「코스트」비교에서 金利, 死亡率, 事業費率 및 契約期間이 달라지는 여섯 가지 경우에 있어 각手段間의 「코스트」차이

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를 알 수 있다. 먼저 [例 1]의 경우는 養老保險, 團體保險, 死亡保險 + 定期積金 중 團體保險의 加入者「코스트」가 69.23원으로 가장 저렴하고 養老保險이 가장 높다. 團體保險은 [死亡保險 + 定期積金]에 비해 0.1%가 저렴하고 養老保險은 10.2%나 높은 「코스트」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차이는 事業費率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두번째, [例 2]는 1978년의 높은 事業費率을 적용하였을 경우로 養老保險이나 團體保險이 모두 [死亡保險 + 定期積金]보다 각각 22.7% 및 4.9%나 「코스트」가 높게 나타나고, 세 번째, [例 3]은 다른 조건은 [例 1]과 동일하나 適用金利가 12%로 높을 경우에 [死亡保險 + 定期積金]에 비해 養老保險은 9.1% 비싸나 團體保險은 1.0% 저렴하여 團體保險이 가장 유리한 선택임을 알 수 있다. [例 5]는 契約期間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될 경우로서 [例

<表 2> 生命保險商品間「코스트」比較(例示)

	死亡保險 (A)	生存保險 (B)	死亡保險 +生存保險 (C=A+B)	養老保險 (D)	「코스트」差	
					C-D	(C-D)/D
死亡保險金 (B)	1,000	0	1,000	1,000		
滿期還給金 (F)	0	1,000	1,000	1,000		
加入者「코스트」(C)						
危險保險料 (P_r)	2.97	0	2.97	2.97	0	
貯蓄保險料 (P_s)	0	62.53	62.53	62.53	0	
事業費 (E)	3.76	18.15	21.91	10.84	11.07	
營業保險料 ($P_r + P_s + E$)	6.73	80.68	87.41	76.34	11.07	14.5%

註 : 1) 事業費率은 1984年 實際平均值 사용(死亡保險 : 55.9%, 生存保險 : 22.5%, 養老保險 : 14.2%).

2) 利子率(r)은 1984年 生命保險約定金利 8%를 적용.

3) 死亡率은 第2調整生命表에 基準.

4) 契約期間 $T=10$ 년, 30세 남자의 경우.

12) 團體保險(group life insurance)은 職場 등 團體의 職員이 10인 이상 가입할 때 新契約費, 集金費가 節約되는 規模의 經濟效果가 있어 個人保險(individual life insurance)의 경우보다 낮은 事業費가 적용된다. 美國 등 外國의 경우는 團體保險이 대부분 保障的 性格이 강하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養老保險과 마찬가지로 保障性보다는 貯蓄性이 강하다. 현재 우리나라 生命保險會社들은 販賣競爭을 위해 個人에 대해서도 團體保險料率을 적용하여 販賣하는 경우도 있다.

1]에 비해 養老保險이나 團體保險이 死亡保險과 定期積金을 結合하는 方法보다 더 불리해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적극적으로 販賣되고 있는 養老保險中에는 2~3年 만기의 短期契約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이 경우의 「코스트」 差는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요약하면 養老保險이나 團體保險은 死亡保險과 定期積金을 結合하는 方法과 마찬가지로 保障과 貯蓄을 目的을 동시에 달성함에도 불구하고 保險의 特性상 事業費 등 附加保險料가 높게 부과됨으로 인해 生命保險商品의 加入者負擔이 높아지게 된다¹³⁾.

養老保險이나 團體保險의 純保險料($P_r + P_s$) 중 대부분이 貯蓄保險料(P_s)로 구성되어 있고 事業費가 純保險料에 比例的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養老保險이나 團體保險의 加入者負擔이 높고 貯蓄性保險의 價格競爭力은 金利(r)가 낮을수록, 契約期間(T)이 長을수록, 또 死亡率(q)이 낮을수록 더욱 낮아진다.

지금까지 保障 및 貯蓄手段間의 「코스트」比較에 있어 稅制效果를 고려하지 않았다. 銀行積金貯蓄의 利子所得에 대해서는 總 16.75%의 稅率(所得稅, 防衛稅, 住民稅, 教育稅 포함)이 적용되나 生命保險의 경우 加入者가 勸

〈表 3〉 (保障+貯蓄) 手段間 「코스트」 比較(例示)

	養老保險 (A)	團體保險 (B)	死亡保險 +定期積金 (C)	「코 스 트」 差		
				(A-C)/C	(B-C)/C	(A-B)/B
死 亡 保 险 金 (B)	1,000원	1,000원	1,000원			
滿 期 還 給 金 (F)	1,000	1,000	1,000			
加入者「코스트」(C)						
例 1	76.34원	69.23원	69.27원	10.2%	-0.1%	10.3%
2	85.95	73.51	70.06	22.7	4.9	16.9
3	61.24	55.54	56.12	9.1	-1.0	10.3
4	75.81	68.76	67.86	11.7	1.3	10.3
5	105.30	168.07	162.32	14.2	3.6	10.3
6	184.89	167.69	160.09	15.5	4.7	10.3

註 : 1) 30세 남자 基準.

2) 解約損失이나 契約者貸付 혜택 등은 고려에서 제외.

3) 保險金利=積金金利=割引率로 假定⁹⁾.

4) 其他의 假定은 아래의 표 참조.

	金 利 (r)	死 亡 率 (q)	事 業 費 率 (α)	契 約 期 間 (T)
例 1	8%	第 2 調整 生命表	1984年 平均值	10年
2	*	*	1978年 平均值	*
3	12%	*	*	*
4	*	簡易經驗 生命表	*	*
5	*	*	*	5年
6	*	簡易經驗 生命表	*	5年

註 “*”표시는 [例 1]의 경우와 동일함을 의미.

13) 生命保險商品別 事業費에 대해서는 池茂男(1982. 12) 參照.

勞所得者이며 滿期還給金이 納入保險料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保險(주로 保障性 保險)의 保險料는 年 24萬원의 범위내에서 所得控除를 받을 수 있다. 또 養老保險의 滿期還給金에 대해서는 利子所得稅가 과세되지 않는다¹⁴⁾. 즉 銀行貯蓄에 비해 保險을 통한 貯蓄이 稅制上相對的으로 優待받는다고 볼 수 있다.

養老保險이나 團體保險은 納入保險料 總額
보다 滿期還給金의 규모가 크므로 保險料 所
得控除惠澤이 없으며 또한 死亡保險金이나
滿期還給金에 대해서 利子所得稅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保險料는 稅效果를 고려하여도
변화가 없다. 그러나 [死亡保險 + 定期積金]의
경우 死亡保險의 保險料는 每年 所得控除 惠
澤이 있으며 그 크기는

이며, 여기서 P_o 는 死亡保險의 年間 營業保險
料, t_m 은 加입자의 限界稅率이다.

定期積金의 利子所得은 소득이 발생하는 時
點에서 課稅되므로 만기(T)에 납부할 總稅額
의 現在價值(A')는

$$A' = (F - P_b \cdot T) \cdot t_i \cdot (1+r)^{-T} \dots \dots \dots (27)$$

이여, 여기서 F 는 滿期還給金, P_b 는 定期積金의 年拂入金, t_j 는 利子所得의 分離課稅率이며 이처럼 稅負擔을 年拂入金에 均等配分하되,

이고 여기서 $A[r, T]$ 는 利子率이 r 이며 契約期間이 T 년인 경우 年金複利의 逆數이다. 따라서 (死亡保險 + 積金)의 稽後「コスト」는

$$(P_o - \Delta_1) + (P_b + \Delta_2) = P_o + P_b + (\Delta_2 - \Delta_1) \dots (29)$$

로 나타낼 수 있다.

<表 4>에서는 上記의 式(29)을 이용하여 死亡保險金 및 滿期還給金이 각각 1,000萬원인 養老保險과 團體保險의 稅後 加入者「코스트」를 死亡保險과 定期積金을 결합한 경우와 비교하고 있다(表 3의 例 1에 基準). 死亡保險의 경우 年保險料가 67,300원이나 保險料 所得控除惠澤(加入者의 限界稅率 20% 假定)을 공제한 實質保險料 負擔은 53,840원이며 銀行定期積金의 경우 滿期還給金에 대한 利子所得稅 負擔을 고려한 年拂入金은 664,030원이 된다. 따라서 死亡保險과 定期積金을 결합하는 경우의 總加入者負擔額은 717,870원이 된다. 稅效果를 고려하기 전에는 養老保險의 加入者「코스트」는 [死亡保險+積金]에 비해 약 10.2% 높았으나, 稅效果를 반영할 때 이 차이는 6.34%로 낮아진다. 반면 團體保險을 [死亡保險+積金]과 그 「코스트」가 거의 비슷하였으나 積金利子所得이 課稅率에 따라 團體保險의 稅後 「코스트」는 상대적으로 3.56%만큼 저렴하게 나타난다. 만약 自動車保險料 등 다른 保險料의 年間 合計額이 所得控除 限度 24萬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死亡保險料의 所得控除惠澤이 없어지므로 [死亡保險+積金]의 年間 「코스트」는 731,330원이 되며 따라서 養老保險은 前者에 비해 「코스트」가 약 4.39% 높으며 반면 團體保險은 5.34% 저렴하게 된다.

이처럼 生命保險事業의 特성상 保險料에 事業費가 부과됨으로 해서 다른 金融機關, 특히 銀行의 賯蓄商品에 비해 賯蓄性保險의 加入者 「코스트」는 높고 반면 收益率이 낮게 나타난다. 만약 解約率과 解約還給金을 고려한다면

14) 銀行貯蓄에 대한 稅制優待措置 등 기타 細部事項은 李永琪(1986 b.) 參照.

貯蓄性 保險에 대한 加入者의 期待收益率은 이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다. 다만 稅制上의 惠澤이 있고 團體保險의 경우처럼 事業費가 낮게 적용되는 경우 生命保險商品이 銀行 積金貯蓄에 비해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團體保險은 團體加入者를 대상으로 保險販賣 및 集金活動을 하게 됨에 따라 규모의 경제에 의해 低率의 事業費賦課가 가능하나 個人保險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團體保險의 낮은 「코스트」惠澤을 다수의 保險加入者가 누릴 수 있다면 좋겠으나 현재 團體保險販賣의 비중은 新契約高나 保有契約高 기준으로 볼 때 1984년 현재 전체의 12~13% 수준에 불과하다¹⁵⁾.

지금까지의 分析의 결과는 구체적인 個別商品별로 加入者의 負擔을 比較, 分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個別商品의 「코스트」는 本分析의 결과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또 대부분의 生命保險商品은 그것이 保障性이거나 貯蓄性이거나 간에 단순한 死亡이나 生存만을

前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 傷害, 入學, 疾病 등에 대한 保障惠澤(benefit)을 제공하고 그에 비례하는 保險料를 賦課하기 때문에 個別保險商品의 保險料比較가 결코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의 保障이건 간에 保險料는 事故發生의 確率과 保險金額, 利子率, 事業費 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平均的으로는 앞의 分析結果가 非現實의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만약 金融機關의 業務領域이 制限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銀行에 의한 死亡保險의 販賣가 가능하다면 銀行은 生命保險會社로부터 契約金 1,000원의 死亡保險을 6.73원(表 2 참고)에 購入하고 이것을 銀行의 10年滿期 積金과 결합하여 保障과 貯蓄을 동시에 추구하는 加入者에게 年拂入金 69.27원에 販賣하면 生命保險會社의 養老保險의 경우보다 價格競爭力面에서 훨씬 유리하다. 따라서 이처럼 養老保險의 保障機能과 貯蓄機能이 分離可能하고 이것은 死亡保險과 銀行의 定期積金에 의해 代

〈表 4〉 稅制效果를 고려한 「코스트」 比較

	養老保險 (A)	團體保險 (B)	死亡保險+定期積金			「코 스 트」 差	
			死亡保險	積 金	合計 (C)	(A-C)/C	(B-C)/C
死 亡 保 險 金 滿 期 還 合 金	1,000萬 원 1,000萬 원	1,000萬 원 1,000萬 원	1,000萬 원 0	0 1,000萬 원	1,000萬 원 1,000萬 원		
年 佛 入 金 <稅 前>	763,400원	692,300원	67,300원	625,400원	692,700원	10.2%	-0.1%
綜合所得稅控除	0	0	-13,460	0	-13,460		
利 子 所 得 稅 <稅 後>	0	0	0	38,630	38,630		
	763,400	692,300	53,840	664,030	717,870	6.34	-3.56
			(67,300 ¹⁵⁾)	(664,030)	(731,330)	(4.39)	(-5.34)

註 : 1) 自動車保險 등 損害保險料와 醫科保險料의 合計額이 年間 控除限度 24萬 원을 초과할 경우 死亡保險料는 所得控除 혜택을 받지 못함.

15) 保險料를 每月 定期的으로 拂入하는 경우보다 保險料 전액을 一時에 納入하거나 年納하는 경우에는 金利割引 및 事業費節減으로 인한 割引의 惠澤이 있으나 一時納이나 年納의 비중은 매우 낮다.

替될 수 있으므로 만약 金融機關의 業務領域制限 등이 없다면 銀行에 의한 貯蓄性 保險에 대한 裁定去來(financial arbitrage)가 가능하게 된다.

이처럼 生命保險商品이 그와 競爭關係에 있는 貯蓄手段에 비해 價格面에서는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加入者 입장에서의 貯蓄保險의 利點을 찾는다면, 첫째, 強制貯蓄(forced saving)의 效果를 들 수 있다. 즉 일단 保險에 가입하면 장기간에 걸쳐 貯蓄을 하게 되므로 개인이나 家計의 消費性向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¹⁶⁾. 둘째, 契約期間이 장기간이며 特殊目的을 가지는 生命保險商品 등 銀行이나 기타 貯蓄機關에서 취급하지 않는 독특한 貯蓄商品을 販賣할 때 가입자의 다양한 貯蓄需要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고 이러한 점에서 貯蓄性生命保險은 比較優位를 가질 수 있다. 세째, 生命保險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約款貸付(policy loan)의 惠澤을 들 수 있다. 銀行積金 貯蓄의 경우에도 가입자 貸付의 惠澤이 있으나 貸付期間이 비교적 短期인 경우가 많은 반면 生命保險의 約款貸付는 金利가 다소 높으나 長期貸出이 가능하다.

기타 生命保險이 가지는 利點도 많으나 貯蓄性保險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貯蓄手段間의 收益性 또는 「코스트」比較가 加入者の 가장 핵심적인 관심이 될 것이다. 따라서 他貯蓄

商品과의 競爭上의 不利性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經營效率化를 통해 事業費의 節減과 貯蓄保險料의 引下를 圖謀해야 하며 3~5年 만기의 短期貯蓄保險보다는 他金融機關이 提供할 수 있는 獨自的인 商品領域을 開發하고 그의 加入者 서비스改善 등 生命保險이 가지는 價格外的 競爭力を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IV. 生命保險產業 發展을 위한 課題

앞에서 貯蓄性 生命保險의 事業費 負擔이 클 때 다른 貯蓄手段에 비해 價格競爭力이 低位에 있음을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生命保險은 지금까지 保障機能보다는 貯蓄性商品에 偏重運營되어 옴에 따라 收入保險料 등 量의으로는 急伸張해 왔으나 그에 따른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즉 높은 解約率과 그에 따른 加入者 解約損失 및 保險紛爭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保險販賣가 消費者の 要求(need)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여 貯蓄資金에 대해 높은 事業費가 부과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金融自律化에 따라 收益性과 滿期構造 등에 있어서 다양한 新金融商品이 출현하여 貯蓄資金 動員을 위한 競争이 더욱 深化될 때 貯蓄保險의 伸張勢는 鈍化될 可能성이 크다¹⁷⁾. 특히 福祉年金制度가 導入될 때 貯蓄保險이 받게 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消費者の 要求에 副應하는 상품을 개발하여 새로운 保險需要를 創出해야

16) 우리나라 生命保險商品의 販賣가 거의 대부분 募集人에 의해 販賣되어 緣故關係에 의해 부득이하게 保險에 加入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強制貯蓄의 效果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다른 형태의 貯蓄을 缩小시키는 效果(crowding out)도 無視할 수는 없을 것이다.

17) 美國의 경우 貯蓄性生命保險의 比重이 장기간에 걸쳐 감소하고 있는 이유로서 높은 事業費와 加入者の 逆選擇(adverse selection) 등에 의해 加入者 收益率이 他貯蓄手段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라는 分析은 Friedman et al(1985 a,b.) 및 Warshawsky(1985) 參照.

하고 또 他金融機關과의 競爭力を 維持하기 위해서는 保險經營의 效率化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될 뿐만 아니라 保險商品의 收益率을 적정히 公示함으로써 潛在的 保險加入者가 이러한 情報를 고려하여 合理的 意思決定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保險收益率 또는 料率公示制度(rate disclosure system)의 導入에 대한 政策的 檢討가 있어야 할 것이며 그의 生命保險產業이 貯蓄性 為主로 운영된 特性과 관련하여 開放化 戰略과 生命保險會社의 支給能力(solvency)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本章에서는 生命保險이 貯蓄性 為主로 운영되어 옴에 따른 問題點과 對策方案에 대해 주로 論議하고자 한다.

1. 保險商品戰略의 再檢討

지금까지 生命保險產業이 他金融機關에서 제공하지 못한 獨特한 貯蓄商品의 판매를 통해 추가적인 貯蓄動員에 기여한 효과는 결코 무시될 수 없으나 保險解約率이 40% 수준에 이르고 특히 解約에 따른 損失이 큼에도 불구하고 가입후 1年 이내에 解約하는 경우가 新契約의 80~90%에 이르는 경우도 있음을 볼 때 현재의 保險商品이 결코 消費者의 요구를 최대한 만족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生命保險이 長期契約型 貯蓄手段(long-term contractual saving)으로서 外國에서도 生命保險이 中요한 貯蓄機關의 하나로

認識되고 있으나 根本的으로는 保險의 貯蓄的機能은 保障保險의 副產物(by-product)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貯蓄資源動員機關으로 指定, 育成해 오면서 貯蓄極大化에 관심이 集中되어 왔다. 그러나 막대한 規模의 事業費가 발생하고 이것이 收入保險料에서 차지하는 比率(事業費率)이 過去에는 20~30% 수준이었으며 최근에도 14~15%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收入保險料의 절대부분이 貯蓄資金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이것은 動員된 貯蓄資金의 漏出(leakage)이라고 볼 수도 있다. 즉 100원의 자금이 保險料의 형태로 動員되어 15월이 事業費로 지출되고 85원만이 產業資金으로 供給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銀行을 통한 貯蓄은 100원의 貯蓄이 전액 產業資金으로 연결되고 2~3%의 預貸「마진」(interest margin)만이 銀行의 費用과 利益으로 充當된다고 볼 때 貯蓄動員에 있어서 生命保險의 運用效率性(operational efficiency)이 문제될 수 있다. 만약 生命保險會社가 保障性 保險商品 중심으로 運營되거나 貯蓄性 保險이라도 銀行의 貯蓄商品과 矛盾적인 競爭關係가 없는 保險特有의 貯蓄商品이라면 이와 같은 效率性比較가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貯蓄性 保險의 많은 부분이 銀行의 積金貯蓄과 競合性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生命保險을 통한 貯蓄動員의 效率性을 신중히 檢討해 볼 필요가 있겠다.¹⁸⁾(물론 이러한 分析은 銀行과 生命保險會社間에만 適用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金融機關을 통한 貯蓄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貯蓄誘因을 위한 金融商品의 기본요건은 우선 貯蓄資金의 단순한 이동만을 誘發하여 어느 貯蓄手段이 他貯蓄을 驅逐(crowding out)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貯蓄의 增大를 기할

18) 金融媒介機關의 效率性(efficiency)을 이러한 去來費用(transaction cost)의 次元에서 認識하자 하는 試圖는 A. Bain(1981) 및 Benston and Smith(1976) 參照. 生命保險會社와 銀行間의 貯蓄動員에 있어서 效率性比較의 試圖는 李永琪(1986 b.) 參照.

수 있어야 하고 加入者 損失增大, 資產의 非效率的 운영 등 바람직하지 못한 外部性을 最小化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政府에서도 保障機能의 擴大를 誘導하는 방향으로 政策運營을 圖謀하고 있으나 貯蓄性 保險販賣에 있어서의 「메리트」는 크고 상대적으로 保障性 保險의 「메리트」는 적다면 保險會社는 여전히 貯蓄性 위주로 運營코자 할 것이다. 保障性 生命保險에 대한 需要를 開發하기 위한 政策手段을 여러 가지 강구해 볼 수 있겠으나 그 예로써 現在 保障性 保險料의 所得控除限度가 24 萬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上向調整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自動車保險料, 醫療保險料으로도 控除限度가 超過되는 수가 많아 生命保險에 대한 稅制上의 「인센티브」는 사실상 적기 때문이다. 또 과거에는 保障性 保險料 산출에 적용하는豫定死亡率이 實際死亡率보다 높아 保障性 保險加入者가 높은 保險料를 부담하고도 保險惠澤을 크게 받지 못한 반면 막대한 死差益이 발생하여 保障保險加入者가 貯蓄性 保險加入者를 補助한 결과가 되었다. 최근에豫定死亡率을 引下調整하여 保險料를 낮춘 것은 保障性 保險需要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러한 政策的 考慮와 더불어 生命保險會社의 商品戰略도 貯蓄性 위주의 經營戰略에서 탈피하여 保障性 保險의 擴大가 圖謀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收入保險料/GNP 비율이 4%를 超過 上廻하여 美國, 日本 등 대다수의 先進國보다 높은 세계 최고의 수준에 있어 國內 生命保險市場의 성장한계에 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있으나 收入保險料

중 결대부분을 차지하는 貯蓄性 資金을 제외한 保障性 保險料만을 볼 때 이 비율은 아직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 앞으로所得水準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保障性 保險에 대한 수요가 보다 활발히 일어날 것이며 이러한 潛在需要를 다양한 保障性 保險商品의 開發·普及을 통해 顯在化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과거와 같이 소비자의 認識不足과 資金動員의 효과가 적다는 이유로 保障性 保險의 開發·普及이 소홀히 된다면 향후 市場開放에 따라 外國生命保險會社가 우수한 保障性商品으로 國內市場을 先占할 우려도 있다. 美國等 主要生命保險國家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貯蓄性 保險需要의 比重이 현저히 減少함에 따라 健康保險, 傷害保險 등 生命保險의 業務領域을 擴充시켜 나가고 있음을 참고할 수 있다.

貯蓄性 保險의 측면에서 볼 때도 앞으로 金融自由化와 經濟環境變化의 推移로 보아個人의 貯蓄意識이 뛰어나게 될 것으로展望된다. 우선 과거의 高인플레時代에서 벗어나고 또 不動產投機抑制措置가 지속됨에 따라 金融貯蓄에 대한 認識이 높아질 것이며 이에 따라 貯蓄商品의 내용을 分析하고 商品間의 收益性, 流動性, 便宜性 등의 차이를 더욱 신중히 比較, 檢討하여 貯蓄商品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生命保險會社의 貯蓄性 保險販賣에 있어서 他金融機關과 競争關係에 있는商品보다도 保障機能과 긴밀히 결합된商品을 開發하여 他金融機關이 가질 수 없는 競爭上の 優位를 살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¹⁹⁾. 또 生命保險會社의 顧客이 대부분 家計임을 감안하여 與信側面에서 住宅資金 등 貸出의 規模擴大, 條件의 改善 등을 통해 加入者惠澤이나 서비스의 폭을 대폭改善함으로써競

19) 金融自律化 등 環境與件의 변화에 따른 美國生命保險會社들의 對應戰略에 대해서는 高瀬政敏(1985) 參照.

爭力を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 保險料率 公示制度(Rate disclosure system)導入 檢討

保險加入者 保護와 保險紛爭의 素地를 줄이기 위해 保險契約 條件을 이해하기 쉽도록 約款을 改定하는 등의 움직임이 있다. 즉 保險契約의 條件을 明示하고 保險金支給 事由의 明確化와 契約者 및 保險會社의 義務 및 權限을 명확히 함으로써 加入者로 하여금 을바른 판단에 의한 契約成立이 가능토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더하여 필요한 것은 生命保險商品의 購入에 따르는 加入者的 負擔, 즉 保險料의 相對比較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保險契約의 約 40~50%는 募集勸誘에 의해 成立하는데 潛在的 加入者가 保險商品의 惠澤과 「코스트」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情報의 부족으로 인해 불합리한 保險選擇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 결과 失效解約의 多發 등에 의해 保險去來의 使命과 機能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나아가서는 生命保險에 대한 신뢰성을 잃게 되고, 保險產業의 전진한 발전을沮害하는 危險이 있다. 또 앞으로 生命保險商品의 開發, 販賣가 自律化됨에도 불구하고 商品情報公開 및流通이 불완전하다면 企業의 價格競爭에 대한 자극을 억제하여 非效率的인 企業經營의 발생에 의해 消費者剩餘(consumer's surplus)가 감소되는 위험이 있다. 특히 生命保險商品이 주로 貯蓄性保險으로 구성되는 이상 代替的인 貯蓄手段間

收益率의 비교가 가능토록 함으로써 個人的目的에 가장 附合하는 貯蓄商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加入者 保護의 核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金融商品間의 收益率이나 價格比較情報은 매우 중요한 意의를 가진다.

保險商品價格과 惠澤에 대한 정확한 情報를 제공함으로써 消費者的 합리적인 保險購買 決定과 生命保險의 건전한 發展을 위해서는 이러한 價格比較情報의 입수가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따라서 保險料 또는 收益率公示制度(rate disclosure system)의 導入을 신중히 檢討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保險價格의 概念規程이나 保險料 算出基準의 설정이 용이하지 않아 標準的, 客觀的 加入者 「코스트」를 계산하는 방법이 확립되지 않고 있다. 美國의 경우에도 다양한 保險料公示方法이 제안되고 있으나²⁰⁾ 貯蓄性 保險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오히려 標準的인 保險「코스트」비교가 용이할 수 있다. 즉 앞의 第Ⅲ章에서 가장 간단한 경우 각종의 保障性과 貯蓄性을 결합한 商品의 경우 貯蓄性 부분은 銀行 등 他金融機關의 대표적 貯蓄商品의 加入者 「코스트」와 비교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保險會社에 따라 豫定利子率, 豫定配當, 滿期還給金, 死亡給付金, 月拂入金 등을 기준으로 이것을 銀行의 貯蓄性商品과 비교하여 加入者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것은 각 貯蓄商品別 진정한 價格(코스트)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하겠다.

앞으로 이러한 保險料率 公示制度의 導入實施를 위해 보다 구체적인 研究·檢討가 있어야 될 것이다.

20) 美國의 rate disclosure index에 대한 研究報告書로서 Belth(1969), Scheel(1975), Winter(1981), Winter(1982) 등 參照.

3. 生命保險市場開放化戰略

國內生命保險產業이 收入保險料, 新契約, 保有契約 등에 있어서 年平均 50% 水準의 높은 成長勢를 지속해 왔고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收入保險料/GNP 比率이나 生命保險市場規模도 世界 最高 水準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外國의 生命保險會社들이 韓國市場에서의 사업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開放壓力을 가중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國내의 大企業그룹들도 資金動員 窓口로서의 生命保險會社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生命保險產業이 진정한 保障의 役割을 담당하는 것이라기보다 주로 貯蓄動員機關의 機能을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즉 점차 保障性의 비중이 높아지도록 政策的으로 指導監督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收入保險料의 95% 이상이 貯蓄資金으로 구성되어 있다. 國내 貯蓄動員의 極大化가 절대 命題였던 과거 우리의 特수한 與件에서 生命保險會社들이 이러한 貯蓄機關의 役割을 맡는 것이 불가피하였다고 볼 수 있겠으나 앞으로 開放化에 따라 外國의 生命保險會社들에 대해서도 國내社와 같이 이러한 貯蓄動員의 役割을 담당토록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앞으로 國내 生命保險會社들도 保障性 保險 위주로 사업의 방향이 誘導되어야 할 것이나 外國生命保險會社에 대해서는 導入의 初期부터 保障機能 위주로 事業領域을 定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우선 國내 生命保險會社와 商品販賣에 있어서 당분간 직접적 경쟁을 피하자는 목적도 있으며 國내 生命保險會社들이 상대적으로 脆弱한 保障性商品

의 開發, 販賣를 통해 加入者의 선택의 범위를 넓히고 또 國내 生命保險會社가 保障性商品에 대한 技術習得을 가능하게 하고 保障性保險 開發, 販賣에 대한 자극을 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生命保險產業에의 新規進入을 희망하는 國內業體들도 資金調達源으로서의 生命保險會社가 아니라 진정한 保障機能의 제공을 통해 社會福祉를 높인다는 인식에서 生命保險事業을 고려해야 될 것이다. 과거에는 資金에 대한 超過需要가 항상 존재하였으나 앞으로는 金融產業의 자율화와 발전이 이루어질 때 資金動員의 극대화가 반드시 과거와 같은 「메리트」(merit)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資金의 運用이 보다 중요시될 것이다. 따라서 生命保險事業을 資金動員手段으로서 보다 기본적으로는 保障性機能의 提供이라는 관점에서 保險事業參與의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의 新規 生命保險會社를 許可하는 경우에도 取扱商品에 대한 일부 制限이 바람직한 것일 수 있다. 즉 保險商品 販賣 중一定比率 이상이 保障性 保險이 되도록 함으로써 貯蓄性 保險市場에서의 지나친 경쟁을 피하여 진정한 保障保險開發을 위한 자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외국이나 國내 生命保險會社의 新規進入으로 인해 현재 經營이 어려운 既存의 生命保險會社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성이 크다면 新規參與業體와 既存業體와의 合作을 통해 이를 既存企業의 脆弱해진 資本構造를 개선하고 새로운 保險技法의 導入과 經營革新을 통해 競争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4. 生命保險會社의 支給能力에 대한 考慮

保險會社의 支給能力은 미래에 發生할 不確定債務에 대비하여 어느 정도 準備金을 충실히 적립하는가, 적립된 資產을 얼마만큼 效率적으로 運營하는가 또 근본적으로는 미래의 發生 가능한 위험을 얼마나 정확히豫測하는가에 달려 있다. 그러나 그외에 우리나라의 保險이 貯蓄性 위주로 되어 있고 또 최근 급격히 신장함에 따라 支給能力에 있어서의 問題가 가중될 우려도 있다. 死亡保險 등 保障性 保險은 偶發的 債務(contingent liability)이며 保險金 支給事由가 全契約期間에 걸쳐 비교적 均等하게 일어난다. 다시 말하면 어느 특정기간에 保險金支給이 일시에 대량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비교적 적다. 그러나 貯蓄性 保險은 確定的 債務의 성격이 강하여 保險支給은 만기에 집중적으로 대량 발생한다. 따라서 어느 기간에 貯蓄性 保險契約이 급격히 증가한다면 契約期間 만료시에 保險金支給도 대량 발생하게 된다. 貯蓄性이 강한 保險일수록, 또 滿期構造가 집중될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 강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만약 支給保險金은 과거의 新契約急增으로 인해 대량발생하는데 비해 收入保險料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면 現金流動性 問題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收入保險料가 매년 急伸張하여 收入保險料로 保險金 支給에 충당하고 準備金 積立을 할 수 있었다. 즉 收入保險料가 계속 빠른 속도로 신장하는 한 保險金 支給에 있어서 現金流動性은 큰 問題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保險이 지금과 같

은 急伸張勢를 계속할 것으로 전망하기는 어렵다. 經濟與件의 변화에 따라 收入保險料 規模가 매년 큰 폭으로 변화할 수 있으며, 또 競爭的 貯蓄商品의 출현 등으로 保險에 의 貯蓄資金流入이 현저히 鈍化될 수도 있다. 또 個別生命保險會社의 측면에서 볼 때도 新規會社의 출현으로 市場占有rate이 축소될 때 資金流入의 規模는 더욱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과거의 급신장한 貯蓄性 保險契約이 일시에 만기에 이르는 반면 收入保險料의 規模는 오히려 축소된다면 現金流動性의 問題가 심각하게 일어날 수 있다.

이처럼 貯蓄性 保險과 관련된 生命保險會社의 支給能力 問題는 保險金 支給이 일시적으로 大量發生하는 特性과 收入保險料의 增加 가능성 등에 의해 파생되며 여기에 非效率의 經營에 따른 準備金積立 不充實, 資產運用收益性의 불량, 流動性管理 未治 등에 의해 더욱 악화된다. 따라서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할 때 資產運用과 準備金積立의 充實化를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 라인」의 설정도 중요하나 특히 會社別 經營效率性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事業費 執行, 資產運用, 準備金積立 등이 특히 不良한 경우에는 集中的인 감독과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保險會社의 不實化를 방지하여 加入者保護와 건전한 生命保險產業이 가능해질 것이다.

5. 生命保險會社의 所有支配構造에 대한 檢討

生命保險은 危險의 集團化(risk pooling)에 의해 加入者가 공동으로相互保障하는 것이

다. 이러한 취지에서 保險業法上 相互生命保險會社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정되고 있으나 現在 6個 會社는 모두 非公開 株式會社의 형태로 設立, 運營되고 있다. 반면 日本은 20여개 生保社가 거의 모두 相互會社이며 美國은 숫적으로는 株式會社가 많으나 규모면으로는 70% 이상이 相互會社로 되어 있다. 특히 美國의 경우 初期에는 株式會社로 설립되었으나 株式型 生命保險會社에 대한 국민의 否定的 意識改善, 經營效率性 提高, 株主의 支配에 의한 保險資產 남용방지와 加入者 權益保護, 非保險企業으로부터의 吸收合併企圖 沮止 등을 목적으로, 많은 大保險會社들이 相互會社로 轉換(相互化, mutualization) 되었다²¹⁾.

일반적으로 株式會社形態의 장점으로 첫째, 株主, 즉 所有主가 있음으로 인해 經營의 非效率性이 最少化되나 만약 相互會社의 경우 主人意識의 결여로 經營이 부실화될 가능성성이 크고 둘째, 設立初期에 支給能力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出資者的 資金供給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먼저 ‘所有主’가 없는 生命保險會社의 經營效率性이 과연 저하될 것인가에 대해 美國의 경우를 보면 相互化에 의해 效率性이 오히려 향상되었다는 관찰도 있으나 競爭的 市場에서는 두 가지 組織形態가 실제 경영면에 서의 차이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見解이다. 둘째, 株主의 納入資本金은 設立초기의 支給能力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資金으로 創業

費의 성격을 가질 뿐 保險經營의 규모가 증대되면 支給能力에서 資本金이 기여하는 바는 극히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支配力 행사의 수단이 되고 있다²²⁾.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生命保險會社가 非公開 株式會社 형태로 운영됨에 따른 問題로서 첫째, 保險事業은 고도의 專門性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保險經營이 資本의 절대적인 支配와 利害關係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따라서 保險事業의 本質的 機能인 保障機能을 담당할 수 있는 專門經營 體制의 確立이 불가능하고 둘째, 이에 따라 保險事業이 資金動員手段으로 인식되어 賽蓄性 위주로 운영되었고 자산의 운용에 있어서도 系列企業에 대한 偏重貸出, 非收益的 出資, 그의 系列企業과 生命保險會社間의 補助的 內部去來에 의해 保險加入者가 피해를 입게 된다는 주장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²³⁾. 지금에 대한 超過需要가 존재하는 한 資金動員의 極大化와 이의 활용이 生命保險會社經營의 가장 큰 動機이며 그에 따라 保險商品戰略도 收入保險料를 極大化하는 賽蓄性 위주로 운영되고 또 外形擴大를 위해 會社間 募集競爭이 치열해짐에 따라 과다한 事業費가 발생하고, 不實契約과 大量解約에 따라 加入者가 입는 損失이 커졌다.

따라서 保險經營의 專門性을 確保하고 保險產業의 진정한 保障機能擴大와 건실한 발전을 위해서는 相互化에 의해 所有-支配로부터 경영이 분리되도록 하던가 企業公開를 통해 所有分散을 유도함으로써 보험의 專門經營體制 確立를 가능하게 하고 加入者保護를 도모하여 保險事業의 公益性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 新規設立이 고려되는 경우에도 相互會社로 인가되던가 事業初期의 支給能力確保 등

21) Mayers & Smith Jr (1986) 및 H. Josephson (1971) 參照.

22) 1984年 현재 6個 生命保險會社의 納入資本金 113億 원, 自己資本 -1,316億 원(資本競食)으로 이미 資產規模은 5兆 원 이상에 이르고 있다.

23) 相互化에 대한 論議는 池茂男(1982) 및 金炳奇(1983) 참조. 또 生命保險의 資產運用實態에 관한 分析은 李京龍(1986) 참조.

의 문제로 支給保證資金(quarantee capital)이 필요하다면 株式會社形態로 설립후 일정기간이나 조건이 성립할 때相互化하는 조건으로 인가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V. 結 言

本稿에서는 貯蓄性 生命保險商品이 銀行의 積金貯蓄과 代替的인 관계에 있으며 따라서 生命保險의 養老保險이나 死亡保險과 生存保險의 결합을 통해 保障과 貯蓄機能을 달성코자 하는 消費者의 要求(need)를 死亡保險과 銀行의 積金貯蓄을 통해서도 충족될 수 있음을 보았다.

生命保險會社의 事業費가 保險料에 부가되므로 貯蓄과 保障機能을 동시에 제공하는 養老保險은 그와 동등한 기능을 하는 積金과 死亡保險을 결합하는 방법보다 加入者負擔이 높아 價格競爭上 劣位에 있게 된다. 따라서 개인은 死亡保險과 積金貯蓄에 가입함으로써 養老保險보다 낮은 「코스트」로 保障과 貯蓄의 목적을 얻을 수 있으며 또 만약 金融機關의 業務領域이 自律化되어 있다면 銀行이 獨自의 으로 死亡保險을 開發하거나 또는 生命保險會社로부터 死亡保險을 구입하고 이것을 定期積金과 결합하여 販賣함으로써 生命保險會社의 養老保險보다 競爭上의 優位를 차지할 수 있는 裁定去來(financial arbitrage)의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貯蓄動員의 極大化라는 政策的 次元에서나 收入保險料의 擴大를 통한 資金調達源의 確保와 市場占有率의 提高를 위

한 生命保險會社의 動機 등에 의해 短期貯蓄性 保險商品販賣競爭이 深化되었고 이에 따라 生命保險產業의 外形의 急伸張은 이루어졌으나 不實契約 및 大量解約과 그에 따른 加入者 損失發生, 事業費 超過發生에 따른 效率性低下 등의 問題가 發生하여 生命保險의 健全한 發展을 沮害하고 있다.

또 潛在的으로는 現金循環(cash flow)의 불안정성 등에 의해 生命保險會社의 支給能力(solvency)이 악화될 수 있는데 貯蓄性에 偏重됨에 따라 現金流入出의 不均衡과 流動性 악화가 일어날 可能性은 더 높아진다. 앞으로 金融自律化에 따라 生命保險商品과 競合關係가 높은 多양한 新種金融商品이 출현하고 國民福祉年金 등의 導入으로 生命保險產業으로의 貯蓄資金流入이 축소되는 경우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本稿에서는 우리나라 生命保險이 貯蓄性 위주로 運營되어 온 것과 관련되는 問題點들을 檢討하였고 이에 대한 방안으로서 保險商品戰略의 修正, 效率性 提高를 통한 事業費 節減, 保險料 公示制度 등을 통한 加入者 保護強化, 對內外開放戰略으로 新規 進入社의 販賣商品의 一部制限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또 貯蓄性 保險은 保險金 支給債務가 集中的 대규모로 발생하므로 收入保險料 規模의 变동에 따라 支給能力上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따라서 生命保險의 流動性 管理와 支給能力의 확보가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生命保險會社의 所有一支配의 集中으로 인해 야기되는 專門經營性 喪失, 株主-加入者의 이해 상충문제와 企業公開 또는 相互化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生命保險產業의 건전

한 育成發展을 위한 개괄적인 문제의 提起에 불과할 뿐이며, 앞으로 生命保險의 각 분야에

있어서 보다 깊이 있는 研究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金炳奇, 「生命保險相互會社의 生成發展과 經營行動에 관한 고찰」, 『保險學會誌』, 第24輯 1983. 8.

李京龍, 「生命保險 20年의 回顧와 先進化課題」, 『保險學會誌』, 第24輯, 1983. 8.

_____, 「保險產業의 資產運用에 있어서의 政策的 課題과 改善方向」, 『保險學會誌』, 第27輯, 1986. 3.

李永琪, 「生命保險產業 發展을 위한 政策課題」, 『第6次 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關聯課題研究』, 韓國開發研究院, 1986. a.

_____, 「生命保險產業의 現況과 效率性 分析」, 韓國開發研究院, 未發表論文, 1986. b.

池茂男, 「生命保險產業의 現況과 發展方向」, 『保險調查月報』, 1982. 12.

松浦克己, 「生保產業에 대한 政府規制의 必要性과 그 限界」, 『保險調查月報』, 1983. 7.

高瀬政敏, 『アメリカの生命保險會社—金融革命下の經營戰略』, 東洋經濟新聞社, 1985.

韓國保險公社, 『保險統計年鑑』, 各年度.

「Sigma」, Swiss Reinsurance, 1985.

Babbel, D. and K. Staking, "A Capital Budgeting Analysis of Life Insurance Costs in the United States: 1950~1979", The Journal of Finance, March 1983.

Bain, A., *The Economics of the Financial System*, Martin Robertson, Oxford, 1981.

Belth, J., "The Relationship Between Benefits and Premiums in Life Insurance",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JRI), March 1969.

_____, "A Note on Disclosure of Realized

Rates of Return for Retirement Accumulations, Savings Accounts, and the Savings Component of Universal Life Insurance Policies," JRI, Dec. 1982.

Benston, G. and C. Smith Jr., "A Transaction Cost Approach to the Theory of Financial Intermediation", The Journal of Finance, May 1976.

Cargill, I.F. and T.E. Troxel, "Modeling of Life Insurance Savings: Some Methodological Issues", JRI, Sep. 1979.

Copeland, T.E. and J.F. Weston, *Financial Theory and Corporate Policy*, Addison Wesley Company, 1979.

Friedman, B. and M. Warshawsky, "The Cost of Annuities: Implications for Saving Behavior and Bequest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NBER), working paper #1682, 1985 a.

_____, "Annuity Pricing and Saving Behavior in the United States", NBER, working paper #1687, 1985 b.

Huebner, S. and K. Black Jr., "Life Insurance", 8th ed., Acc, 1972.

Josephson, H.D., *Life Insurance and Public Interest*, Crown Publishers, 1971.

Mayers, D. and C. Smith Jr., "Ownership Structure and Control: The Mutualization of Stock Life Insurance Companie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16, 1986.

McCabe, G. and Witt, "Insurance Pricing and Regulation Under Uncertainty: A Chance-

- Constrained Approach”, JRI, Dec. 1980.
- Moffet, D., “An Analysis of the Demand for Life Insurance: The Consumer’s Problem”, JRI, June 1979 a.
- _____, “An Analysis of the Demand for Life Insurance: Mathematical Foundations”, JRI, June 1979 b.
- Scheel, W., “Company Retention-An Unreliable Indicator of the Cost of Life Insurance to the Policy Owner”, JRI, March 1975.
- _____, “The Effects of Risk Reduction Inherent in Universal Life Insurance”, JRI Part I, II, June, September 1979.
- Warshawsky M., “Life Insurance Savings and the After-Tax Life Insurance Rate of Return”, JRI Dec. 1985.
- Winter, R., “On the Rate Structure of the American Life Insurance Market”, The Journal of Finance, March 1981.
- _____, “On the Choice of an Index for Disclosure in the Life Insurance Market: An Axiomatic Approach,” JRI, Dec. 1982.

附 錄

[附錄 A]

B 및 C 가 주어졌을 경우 F 를极大化하기 위해서는

$$\text{Max } F = a + c$$

$$\begin{aligned} &= a + (C - va - qv\lambda_2 b) / (1 - q)v\lambda_3 \\ &= a[1 - 1/(1 - q)\lambda_3] \\ &\quad + (C - qv\lambda_2 b) / (1 - q)v\lambda_3 \end{aligned}$$

$$s.t. C \geq va + qv \cdot \lambda_2 b$$

$$B = a + b$$

$$b \geq 0$$

μ_1 및 μ_2 를 Lagrangian multiplier라 하면

$$\begin{aligned} \mathcal{L} &= a[1 - 1/(1 - q)\lambda_3] \\ &\quad + (C - qv\lambda_2 b) / (1 - q)v\lambda_3 \\ &\quad + \mu_1(C - va - qv\lambda_2 b) + \mu_2(B - a - b) \end{aligned}$$

따라서 Kuhn-Tucker 條件은

$$\frac{\partial \mathcal{L}}{\partial a} = 1 - 1/(1 - q)\lambda_3 - v\mu_1 - \mu_2 = 0 \quad \dots \quad (\text{A-1})$$

$$\begin{aligned} \frac{\partial \mathcal{L}}{\partial b} &= -qv\lambda_2 / (1 - q)v\lambda_3 - \mu_1qv\lambda_2 - \mu_2 \\ &= 0 \quad \& \quad b \geq 0 \dots \dots \dots \quad (\text{A-2}) \end{aligned}$$

또는

$$\begin{aligned} \frac{\partial \mathcal{L}}{\partial b} &\leq 0 \quad \& \quad b = 0 \dots \dots \dots \quad (\text{A-2}') \\ \frac{\partial \mathcal{L}}{\partial \mu_1} &= C - va - qv\lambda_2 b = 0 \quad \& \quad \mu_1 \geq 0 \\ &\dots \dots \dots \quad (\text{A-3}) \end{aligned}$$

또는

$$\begin{aligned} \frac{\partial \mathcal{L}}{\partial \mu_1} &\geq 0 \quad \& \quad \mu_1 = 0 \dots \dots \dots \quad (\text{A-3}') \\ \frac{\partial \mathcal{L}}{\partial \mu_2} &= B - a - b = 0 \quad \& \quad \mu_2 \neq 0 \dots \quad (\text{A-4}) \end{aligned}$$

이러한 條件을 滿足하는 a , b , c 는 B 와 C 가 주어졌을 때 F 를极大化한다.

[附錄 B]

式 (A-1)과 (A-2)를 μ_1 에 대해 풀면

$$\mu_1 = \frac{1}{v} \cdot \frac{(1-q)\lambda_3 + q\lambda_2 - 1}{(1-q)\lambda_3(1-q\lambda_2)} \quad \dots\dots(B-1)$$

條件式 (13), (14)에 의해 (B-1)의 分子는 항상 正(positive)의 값을 가지며, 또 (13), (14)를 정리하면

$$q < \lambda_2 q < 1 \quad \dots\dots(B-2)$$

$$(1-q) < (1-q)\lambda_3 < 1 \quad \dots\dots(B-3)$$

따라서, $q + (1-q) < (1-q)\lambda_3 + \lambda_2 q$ 에서

$$0 < (1-q)\lambda_3 + \lambda_2 q - 1$$

따라서 $\mu_1 > 0$ 이다. 따라서 式 (A-3)이 成立하고, $C = va - qv\lambda_2 b$ 가 되고 동시에 $c = 0$ 가 된다. 또 만약 (A-3')가 成立한다면 이것은 $\mu_1 = 0$ 이며, 동시에 $b = 0$, $c > 0$ 임을 證明할 수 있다.

[附錄 C]

生命保險 事業費 負擔의 韓·美·日間 比較

지금까지 貯蓄性 保險의 경우 保險料에 事業費가 부과됨으로 他貯蓄手段에 비해 競爭力이 낮다는 분석을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生命保險 事業費率이 日本, 美國 등에 비해 결코 높지 않으며 최근에 들어서는 오히려 外國보다 낮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附表 1〉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平均事業費率은 최근 (1984)에는 14.4%로 美國이나 日本보다 현저히 낮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生命保險은 美國, 日本 등에 비해 貯蓄性의 비중이 월등히 높고 따라서 保險契約高 1,000원에 대한 보험료는 美國, 日本이 약 14~16원임에 비해 우리나라에는 50~55원으로 保險料가 3倍 이상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비록 保險料에 대한

事業費率은 낮다 하더라도 保險契約 (또는 benefit) 1,000원에 대한 事業費는 최근 약 8월으로 1980년의 12.7원에 비해서는 하락하였으나 日本, 美國의 3월 정도에 비해 아직도 2倍 이상 높은 수준이다.

第Ⅱ章에서 본 바와 같이 保障性 保險의 경우에는 死亡率이 1%라고 하면 事業費를 포함한 附加保險料가 營業保險料의 99%까지 가능하고 貯蓄性 生存保險의 경우는 他貯蓄手段과의 競爭力を 고려할 때 事業費率이 死亡率 1%를 초과하지 못함을 보았다. 다시 말하면 保障性 保險은 加入者의 危險回避性向(risk aversion)이 높을수록 99%까지의 높은 附加保險料가 가능하나 貯蓄性 保險에 대해 현재와 같은 높은 事業費가 부가될 때 競爭력에 있어서의 問題가 일어난다.

〈附表 1〉 國別 事業費 比較

	1980	1981	1982	1983	1984
A. 事業費率(事業費/收入保險料, %)					
日 本	23.8	23.0	22.0		
美 國			22.0		
韓 國	24.0	24.5	21.9	17.5	14.4
B. 保險契約 1,000원當 保險料(收入保險料/保險契約高, 千分比)					
日 本	14.4			15.2	
美 國	14.1			16.3	
韓 國	53.1			49.0	55.0
C. 保險契約 1,000원當 年間 事業費 ¹⁾ (事業費/保險契約高, 千分比)					
日 本	3.4			3.3 ²⁾	
美 國	3.1			3.6 ²⁾	
韓 國	12.7			8.6	7.9

註: 1) $C = A \times B$.

2) 1982년의 事業費率 使用.

資料: 1) 事業比率: 保險統計年鑑(韓國), 「Insurance」, 1983(日本), 「Life Insurance Fact Book」, 1983(美國).

2) (收入保險料/保險契約高) 比率: Sigma, July 1985.